

2022년 제1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5·6급) 임용시험 공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5·6급)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2월 11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현황

근무부서	임용등급	임용인원	임용기간*	원소속
투자유치부 (투자유치1과)	행정5급 (일반임기제)	1명	1년	부산시
투자유치부 (투자유치2과)	행정6급 (일반임기제)	1명	1년	경상남도

* 임용기간 :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2 임용분야 주요업무

임용분야	주요업무
부산지역 투자유치 분야	▶ 첨단산업, 서비스, 항만물류 분야 국내·외 IR 및 잠재투자자 발굴 ▶ 효율적인 투자활동을 위한 타깃기업 D/B 구축 ▶ 관련 산업 동향 파악 및 투자자 분석,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 핵심전략산업 중심으로 앵커기업 및 전·후방기업 타깃팅 유치
경남지역 투자유치 분야	

3.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및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임기제공무원 규정」 제2조(임용승인신청 등)

4. 보수수준

○ 보 수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5급(상당)	-	62,686천원	▶ 하한액 원칙 ▶ 구체적인 기본연봉은 능력·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
6급(상당)	77,932천원	51,928천원	

※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 성별·주소지·연령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

응시자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자격요건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임용분야	임용직급	자 격 요 건
부산지역 투자유치 분야	행정5급 (일 반 임기제)	<p>◇ <u>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중 외국어(영어) 능통자</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 관련분야 및 경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계 금융기관, 투자기관, 컨설팅사, 외국(정부)기관, 중앙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국제통상·투자유치 관련분야 <p>< 우대요건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외 일어·중국어 등 외국어 가능자 우대
경남지역 투자유치 분야	행정6급 (일 반 임기제)	<p>◇ <u>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중 외국어(영어) 능통자</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 관련분야 및 경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계 금융기관, 투자기관, 컨설팅사, 외국(정부)기관, 중앙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국제통상·투자유치 관련분야 <p>< 우대요건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외 일어·중국어 등 외국어 가능자 우대

6.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형식요건 심사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등 형식요건 심사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④ 예의·품행·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개인별 영어 프리젠테이션(5분이내) 포함

※ 외국어 능력의 경우, 면접 시 회화능력 검증 실시예정

합격자 결정기준

- 의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하였을 경우 불합격
- 불합격자 외 평정항목별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임용인원 만큼 합격자로 결정

7. 시험일정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발표	면접시험(예정)	합격자 발표(예정)
'22. 2. 11.(금) ~ 2. 21.(월)	'22. 2. 22.(화) ~ 2. 28.(월)	'22. 3. 7.(월)	'22. 3. 17.(목)	'22. 3. 18.(금)

※ 상기일정은 업무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면접일자 등 확정 공고

8. 응시원서 교부·접수

- 접수기간 : 2022. 2. 22.(화) ~ 2. 28.(월) 18:00

- 원서교부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공고/고시)에서 다운로드

- 제출처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총무과(5층)

-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접수시간은 09:00 ~ 18:00(점심시간 제외), 토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우편접수 권고

등기우편 접수시 유의사항

- ① 원서접수 마감일 우편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46757)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232로 38-2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5층 총무과
- ② 우편접수 전 채용 담당자와 전화(☎ 051-979-5042) 확인 후 발송
- ③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 「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동봉
- ④ 반신용 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9. 재공고 및 변경공고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 또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 재공고시에는 1차 공고 응시자는 기재출한 응시원서로 같음
-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다시 공고함

10.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연번	제출 서류	비 고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2	응시원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시수수료 : 5급 10,000원, 6급 7,000원(부산시 수입증지) (우리청 1층 민원실에서 수납 후 전자인증 날인 / 정부 수입증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적용 불가)▶ 우편제출 시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별지 제2호】
3	이력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 미첨부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3호】

연번	제출 서류	비 고
4	자기소개서(A4 3매 이내) 1부	【별지 제4호】
5	직무수행계획서(A4 5매 내외, 요약서 2매 이내 첨부) 1부 ▶ 면접 시 직무수행계획 발표(PPT)가 있을 예정이므로 연관성 있게 준비	【별지 제5호】
6	최종 학력증명서 각 1부(원본) ▶ 박사 학위는 석·학사 학위, 석사 학위는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모두 제출 ▶ 외국학위의 경우 번역본(공증 포함) 첨부	
7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u>발행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u>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 증명자료 첨부 ▶ <u>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u> ▶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 ▶ 비정규직(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 명시	
8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출력 또는 방문 발급 ▶ <u>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u> ▶ 경력증명서 발행기관명과 확인서의 근무기관명이 불일치 할 경우, 동일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	
9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6호】
10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생략가능 ▶ 주민등록초본 1부(전체주소 기입, 남자 병역사항 포함)	【별지 제7호】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연 번	제출 서류	비 고
1	외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사본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원서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2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및 정보화 자격증 사본 ▶ 면접시험일 기준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유효	
3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된 자료만 인정	
4	학위(연구)논문 사본·저서·특허·기타 연구개발 실적 성과자료 각 1부 ▶ 학위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자유서식> ▶ 성과물은 경력인정 범위 내 작성되어야 하고 2점 이내로 한정	
5	지원분야 근무실적 및 특이사항 1부 ▶ A4 3매 이내	

다. 응시자 유의사항

-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단, 어학능력은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는 한글번역본 또는 한글번역 요약본을 함께 첨부 ※ 최종합격 시 사실공증

- 입증자료는 사본으로 제출하며, 필요시 원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관련분야 실무 경력과 관련하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함.
- 전일(1일 8시간)이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과 근무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 희망 시 반환 가능

11. 기타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1인 이하일 경우, 7일 이상 연장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우리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응시관련 : 기획행정부 총무과(☎ 051-979-5042)

- 직무관련(행정5급) : 투자유치부 투자유치1과(☎ 051-979-5243)
- 직무관련(행정6급) : 투자유치부 투자유치2과(☎ 051-979-5264)